

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(AI)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26.10.08]
(제정) 2026.10.08 조례 제2426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버스정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576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형차량의 인공지능(AI)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차량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형차량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 또는 대형자동차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소유한 차량 및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.
2. “인공지능(AI) 보행자 감지장치”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,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방법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등록된 대형차량에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(AI) 보행자 감지장치(이하 “보행자 감지장치”라고 한다)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설치 권장 및 지원) ① 시장은 대형차량에 대하여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형차량에 보행자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보행자 감지장치의 성능 기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개인정보 보호 등) 시장은 보행자 감지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·홍보 등) ① 시장은 관내 대형차량 소유자·관리자,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감지장치의 사용법, 시야 사각지대의 위험성,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감지장치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각급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6. 10. 8. 조례 제242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